

국민연금

100년
100답

CONTENTS

I

국민연금 제도

>> 일반

001_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8
002_ 국민연금이 꼭 가입해야 하나요?	9
003_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10
004_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1
005_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12
006_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13
007_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14
008_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15
009_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16
010_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18
011_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19
012_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

>> 기금 운용

013_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2
014_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23
015_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24
016_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25
017_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26

II

가입

>> 일반

018_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있나요?	28
019_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있나요?	29
020_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30
021_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022_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32
023_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있나요?	33
024_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34
025_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026_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36
027_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37

» 지역가입자

028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38
029_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9
030_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40
031_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41
032_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42
033_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43
034_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44
035_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45

» 사업장가입자

036_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46
037_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47
038_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039_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9
040_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50
041_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51
042_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52
043_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3
044_ 출산 전 · 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54
045_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55
046_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56
047_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58

CONTENTS

III

연금보험료 납부

>> 일반

048_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049_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61
050_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62
051_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63
052_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64
053_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65
054_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66

>> 지역가입자

055_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67
056_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68
057_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69
058_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70

>> 사업장가입자

059_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71
060_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72
061_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73
062_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74
063_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75
064_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6

IV

국민연금 지급

>> 일반

065_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78
066_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79
067_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80
068_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81
069_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82
070_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83
071_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84
072_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85

» 노령연금

- 073_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86
- 074_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87
- 075_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88
- 076_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90
- 077_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
- 078_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92
- 078_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3
- 080_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94

» 장애/유족연금

- 081_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6
- 082_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98
- 083_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99
- 084_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0
- 085_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102
- 086_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3
- 087_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4
- 088_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5
- 089_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06
- 090_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8
- 091_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9
- 092_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0

» 사망/반환일시금

- 093_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111
- 094_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112
- 095_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3
- 096_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4
- 097_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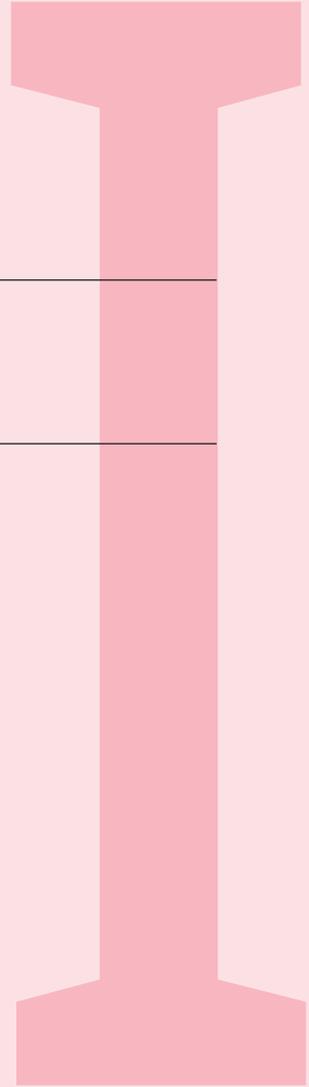
» 중복급여의 조정

- 098_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116
- 099_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7
- 100_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18

국민연금 제도

일반

기금 운용





00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9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없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003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원 정도 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0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00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006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7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5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2년 1분기 연 2.12%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0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21년 11월 기준 총 37개국]

효과	국가명
보험료 면제 (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27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터키(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00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2008. 1. 1.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00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010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1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01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노후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미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로 나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진단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	노후준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
사후관리	노후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행태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시 설정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점검 및 추가 정보 제공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타 공공·민간영역의 개별적·부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내연금 사이트(<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내연금 사이트'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가와 교육 일정·내용 등을 조율한 후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2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예상연금액·가입내역·미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 청구·취득 신고·반추납신청 등의 신고·신청 및 가입증명서 등의 증명 발급 처리가 가능함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원하는 연금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취득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카카오페이·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와 예상노령연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의 경우 수급계좌변경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012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모바일 앱 제공 서비스

대상	구분	서비스
개인	조회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가입내역, 받은 연금액,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 연금보험료 미납내역·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조회,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수금 납부내역, 반납금 납부현황·미납내역, 추납보험료 납부현황·미납내역, 실업크레딧 납부현황·미납내역 조회, 대여금 상환내역 등
	신고·신청	(상담예약신청) 노령연금, 일시금, 장애연금, 사망관련급여, 공적연금연계, 기초연금 연금(일시금) 청구,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납부재개·납부예외,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반납금 납부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심사청구, 수급권 포기·포기철회 신청, 수급권 연기·재지급 신청, 소득있는 업무중사·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청 등
	증명발급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일시금 지급내역서,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후준비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노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진단, 교육 신청
	기타	(신고센터) 자격확인청구, 부정수급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실태조사,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헬프라인 (고객센터) 채팅상담, 모바일 앱 개선요청, 국민제안, 상담신청
사업장	가입확인 대상 내역 조회, 사업장 기준소득 정기 결정, 보험료 지원 내역, 과오납금 조회, 가입증명서, 납부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사용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증명서 진위확인,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소득 총액 신고 등	
공통	(고객센터) 공지사항, 국민제안 내역확인, 국민연금콜센터 (공단소식) 세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국민연금포스트, 기금운용현황, 연구원발간자료 팩스보내기, 상담센터(상담안내), 증명서 진위확인 등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013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구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1213.4조 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64.7조 원이 지출되어 948.7조 원이 적립되어 있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환경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20년 800조 원을 돌파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잠정 948.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35.8%(340.0조 원), 해외채권 6.7%(63.9조 원), 국내주식 17.5%(165.8조 원), 해외주식 27.0%(256.6조 원), 대체투자 12.6%(119.3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1년 12월 말 530.8조 원**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948.7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태지역 금융투자 권위자인 Asia Asset Management 誌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전문지인 IPE Real Asset誌로부터 '올해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 상'과 아태지역 글로벌 투자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자인 The Asset誌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의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14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 현황 및 수익률, 거래 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운용 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가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 별도로 정한 사항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s://fund.nps.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015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530.8조 원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 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 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530.8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16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군으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다변화를 실현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국내 벤처투자자로 대체투자를 시작한 이후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해외 헤지펀드 등 투자 대상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체투자 투자범위는 국민연금기금 관련 투자정책서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전술적 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2021년 12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의 **12.6%인 119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25조 3백억 원**을 국내 부동산, 인프라,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94조 2천 7백억 원**을 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 자산의 투자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대상 사업 소관 실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대체투자 자산으로는 영국의 플럼트리 코트, 독일의 마인제로, 호주의 오로라 플레이스, 싱가포르의 프레이저스 타워, 미국의 원 밴더빌트, 캐나다의 CIBC 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헤지펀드와 같이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해 탐색하고,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7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책임투자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책임투자란 투자이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Environmental),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이하 'ESG') 등 고려하는 투자로서,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6년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등 책임투자 활동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의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이 총직한 집사(steward)로서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각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가입

일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018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2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2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019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2년 1월 현재 3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02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 (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021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022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2년 1월 현재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023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재[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024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025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026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7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 ·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029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03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 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3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가지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 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3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33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2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03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 가능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 가능	-
사업장(직장) 가입자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035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036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만 신고 인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 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6.9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6%(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 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2.1. 기준)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99%	3.495%	3.495%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038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 ·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웹팩스 신고**: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0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0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 / (320 + 480) \times 524만원 = 2,096천원$ 으로 연금보험료는 188,640원
(본인 납부금액 94,32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 / (320 + 480) \times 524만원 = 3,144천원$ 으로 연금보험료 282,960원
(본인 납부금액 141,48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질문 40>를 참고하면 됩니다.



0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044

출산 전 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045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04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4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 7. 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047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일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048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049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050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051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등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2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2년)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 기간	분할납부 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053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다만, 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의 취득신고일이 있으면 가입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 ※ 월평균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055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급하여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6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7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인 분은 월 45,000원이,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2년 1월 현재 최대 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1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	90,000원 초과	90,000원 이하
지원액	월 45,00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58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059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060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만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
-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062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3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 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의 취득신고일이 있으면 가입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063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음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 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4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 체납은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 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일반

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

사망/반환일시금

중복급여의 조정



065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066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짐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9만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원(27만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 : 2,681,724

(2022년 기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100만원	90,000원	10년	188,910원
		20년	373,000원
		30년	557,090원
300만원	270,000원	10년	291,540원
		20년	575,620원
		30년	859,710원

※ 2022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06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68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069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내역 조회 가능
-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070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수령액도 조정됨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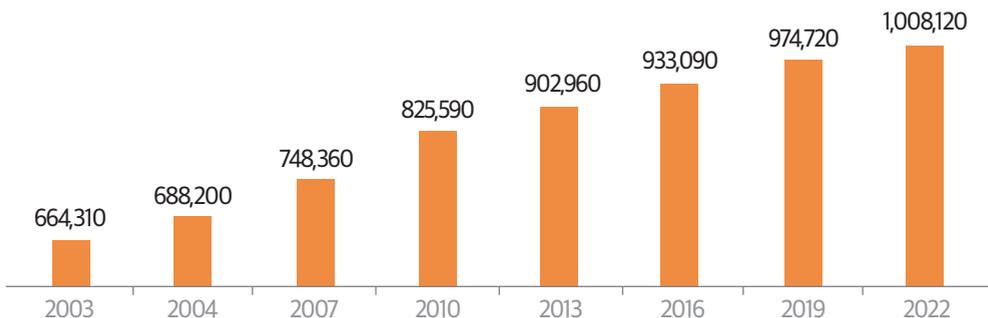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 참고 2 - 실제 연금액 인상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 (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됨)



071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

· 2022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69,630원 (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9,710원 (월14,970원) 지급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2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9,630원(월 22,46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2년 조정률: 2.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072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한, 산림조합중앙회



073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074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 하나요?

·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가능)



07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8. 6. 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07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

출생연도	~1952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 1964년	1965~ 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수급가능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076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 가능
-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07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 6. 22. 이후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예정(법률 제18608호, 2021.12.21. 일부개정, 시행일 2022.6.22. 국민연금법 제62조)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50%~90%, 10% 단위)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07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현재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2022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1961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07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률	50%	60%	70%	80%	90%



079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 2022.6.22. 이후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예정(법률 제18608호, 2021.12.21. 일부개정, 시행일 2022.6.22. 국민연금법 제62조)

079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80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080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 홈페이지(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1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82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0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0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 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84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 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085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가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086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087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2007. 7. 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8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 연금수급연령 상황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089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2022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도는 월평균 2,681,724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 11. 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가 있고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090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 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091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92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093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94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 되어 연금액 산정



095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096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21.11.1.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 없이 인정 (16개국)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2021.11.1.)	벨리즈	그레나다, 오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 인도, 터키,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변경



097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098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9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00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 (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총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부록

NPS

알아두면 좋은 연금상식

{ 임의 가입

#본인희망

#노후준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



연금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100만 원) 기준
최소 보험료 9만 원부터 납부 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 추후 납부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추납)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에, 실직, 사업 중단, 경력 절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가 있는 분



납부 방법 및 기간

: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분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분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분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원금

월보험료	90,000원 이상	90,000원 미만
지원액	월 45,000원 지원	월 보험료의 1/2 지원

{ 연기 연금

#연금지급연기

#1회가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



대상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받는 사람
(1회 신청 가능)



가산되는 연금액

: 연기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음
(소득상황, 건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지역연금

#가입기간합산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분들도
국민연금, 지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등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22년 3월 부터 최소연계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예정(군인연금제외)



이런 분들에게 추천

-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지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 법 공포일(09.2.6) 당시 각 연금법에 가입 또는 재직 중인 사람이
공포일 이후 다른 지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방법

1. 연금제도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
2. 퇴직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후 신청 가능!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기관에서
신청 가능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군인연금 | 02)3146-6471 ☎사학연금 | 1588-4110
☎별정우체국연금 | 02)3278-7731 ☎공무원연금 | 1588-4321

{안심 통장

#전용계좌

#압류방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금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



입금 가능한 연금 종류

: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반환일시금 등 모든 국민연금 급여(월 185만원 이내)



개설 방법

: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 후,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통장 변경 신청 진행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 실업 크레딧

#실업기간

#연금보험료납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분



기간

: 1인 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 출산 크레딧

#노령연금_받을때_신청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인정기간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 부터 1인 마다 18개월 추가 인정(최장 50개월)



대상

: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명 중 한명에게 적용
(균분 지급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기간

#노후준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대상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으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의 경우 해당

*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이력 있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

국민연금

100_문
100_답

주 소_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홈페이지_ <https://www.nps.or.kr>

0A32-202203-PM-0124